

경운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취·창업 지원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, 제반 문제의 해결, 기업가정신의 확산 및 취·창업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, 교내의 취·창업 및 진로지도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개선 및 의견수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과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진로지도 및 취·창업관련 업무
2. 진로개발 및 취·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진로 및 취·창업 상담 지원
4. 대학교 내 취·창업지원 인프라 구축
5.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활동 지원
6.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사업 업무
7.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·운영
8. 취·창업경진대회 및 취·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
9. 취·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
10. 부서별 취·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성과관리에 대한 심의
11. 취·창업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조사와 만족도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자체관리
12. 취·창업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부서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조정
13. 취·창업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사업(각종 DB관리 및 기업체 연계 활동) 운영
14. 그 외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교무위원인 인재개발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삭제(2018. 8. 1)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대학일자리센터는 총장직속으로 한다.

② 센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컨설턴트를 두고, 행정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③ 센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컨설턴트 중 1인 이상의 선임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.

④ 삭제(2018. 8. 1)

⑤ 삭제(2018. 8. 1)

⑥ 삭제(2018. 8. 1)

제5조(청년고용지원협의회)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취·창업 관련 중요사항 심의 및 기능적 연계구축 및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7인 이상의 대학 및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.

- ① 대학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대학 및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에 필요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⑤ 대학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운영계획 심의
 2.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폐지사항 심의
 3.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
 4. 기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필요 사항에 관한 심의
- ⑥ 지역청년고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정부 및 지자체지원사업의 공동프로그램 계획
 2. 양질의 일자리발굴 및 구직정보제공 연계
 3. 기타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의 필요 사항에 관한 계획

제6조(재정) ①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대학지원금,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, 기타 수입(지원)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 사업지침에 따른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